

시행원규 제9호

학생 징계지침 일부개정지침

2016. 2. 26

주무부서 : 학생지원팀

1. 개정취지

- 법률용어로 포괄적 개념의 성범죄 표현 용어인 ‘성폭력’의 개념은 성폭행, 성추행, 성희롱으로 구분되며, 이를 지침에 반영코자 함.

※ 성폭력의 용어 정의

<p>※ 성폭력(성범죄) - 심리적, 물리적,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(性)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, 성폭행(강간), 성추행, 성희롱을 포괄하는 개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성폭행 -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로 인한 강간 또는 강간 미수② 성추행 - 가해자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신체부위(가슴, 엉덩이, 성기 등)를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신체접촉 행위③ 성희롱 -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(性的)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

2. 주요골자

- ‘학생 징계지침’의 [별표 제2호] 학생징계양형기준의 표에 제시된 징계사유 제1호 ‘나’ 항의 성추행, 성폭행 항목을 성폭력 개념(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 및 기타 성관련 불량행위)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양형기준을 제시하도록 개정함.

3. 학생 징계지침 일부개정지침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학생 징계지침 일부개정지침

학생 징계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‘학생 징계지침’의 [별표 제2호] 학생징계양형기준의 표에 제시된 징계사유 제1호 ‘나’항의 “성추행, 성폭행”을 “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 및 기타 성관련 불량행위)”로 한다. 징계 양정 기준은 “근신”부터 “유기정학”, “무기정학”, “제적”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2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표 제2호					별표 제2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징계 사유 \ 징계 양정</th> <th>근신</th> <th>유기정학</th> <th>무기정학</th> <th>제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성행 불량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가. 폭행상해 및 협박</td> <td>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tr> <td>나. 성추행 <u>성폭행</u></td> <td>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tr> <td>다. 절도</td> <td>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징계 사유 \ 징계 양정	근신	유기정학	무기정학	제적	1. 성행 불량					가. 폭행상해 및 협박		○	○	○	나. 성추행 <u>성폭행</u>		○	○	○	다. 절도		○	○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징계 사유 \ 징계 양정</th> <th>근신</th> <th>유기정학</th> <th>무기정학</th> <th>제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성행 불량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가. 폭행상해 및 협박</td> <td>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tr> <td>나. <u>성폭력</u> (<u>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</u> <u>및 기타 성관련 불량행위</u>)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tr> <td>다. 절도</td> <td>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징계 사유 \ 징계 양정	근신	유기정학	무기정학	제적	1. 성행 불량					가. 폭행상해 및 협박		○	○	○	나. <u>성폭력</u> (<u>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</u> <u>및 기타 성관련 불량행위</u>)	○	○	○	○	다. 절도		○	○	
징계 사유 \ 징계 양정	근신	유기정학	무기정학	제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성행 불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폭행상해 및 협박		○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성추행 <u>성폭행</u>		○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. 절도	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징계 사유 \ 징계 양정	근신	유기정학	무기정학	제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성행 불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폭행상해 및 협박		○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<u>성폭력</u> (<u>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</u> <u>및 기타 성관련 불량행위</u>)	○	○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. 절도	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<신 설></u>					<u>부 칙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<p><u>이 지침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